



"기회는 공정하게! 희망은 다같이!"

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

보도자료

제 공 일 : 2011. 8. 24.
제 공 자 :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
과 장 : 심 재 규
사무관 : 이 상 집
전 화 : 500-1848
쪽 수 : 2P
별첨자료 : 있음(1P)

이 자료는 2011년 8월 25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「종자산업법 개정 및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」 공청회 개최

- 종자산업 육성기반 및 식물 신품종보호권 강화 위주로 개편 -

《 주 요 내 용 》

◇ 「종자산업법 전부개정 및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」 공청회 개최

- 개최 목적 : 「종자산업법 전부개정 및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」 관련 산업계, 학계 등 각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
- 일시 및 장소 : '11. 8.25(목) 10:00~12:00, aT센터 중회의실
- 참석대상 : 종자업체, 종자관련단체, 학계 등 100여명 예상

- 농림수산식품부는 현행 종자산업법을 종자산업 기반조성 및 종자유통관리 위주로 개정하는 한편, 식물신품종 육성자 권리 보호 규정을 분리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을 제정하기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'11.8.25(목) 10:00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.

- 금번 종자산업법을 개정하게 된 것은 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여 우리나라를 종자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종자산업육성 기반조성 등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,

- 현행 종자산업법 중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 관련 조문을 분리하고,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의 국제협약에 의거 2012년부터 보호대상이 모든 식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하고자 식물신품종보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.

- 금번 공청회는 관련 산업계, 학계 등 각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, 전문가 6명의 패널토의와 참석자들 간의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된다.

-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패널토의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,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.

[별첨 1]

「종자산업법 개정 및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」 공청회 개최계획

□ 개최 목적

- 「종자산업법 전부개정 및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」 관련 산업계, 학계 등 각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

□ 개최개요

- 일 시 : '11. 8.25(목) 10:00~12:00 (2시간)
- 장 소 : aT센터 중회의실(서초구 양재동 소재)
- 주 최 : 농림수산식품부
- 참석대상 : 종자업체, 종자관련단체, 학계 등 100여명 예상

□ 진행순서

시 간	내 용	비 고
09:50~10:00 (10분)	▪ 등 록	
10:00~10:05 (5분)	▪ 개 회 사	녹색성장정책관
10:05~10:35 (30분)	▪ 제·개정 법률안 발표 - 종자산업법 전부개정(안) -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(안)	종자생명산업과장
(5분)	※ 자리 정돈	
10:40~11:20 (40분)	▪ 패널토의 (주제 : 이회봉 총남대 교수) - 배인태 회장(한국종자협회) <산업계> - 오대근 교수(한국농수산대학) <학 계> - 윤진영 회장(종자연구회장) <연구계> - 김도승 연구원(한국법제연구원) <법조계> - 최인석 농민신문 경제유통부장 <언론계>	
11:20~12:00 (40분)	▪ 종합토론	
12:00	▪ 폐 회	

[별첨 2]

종자산업법 개정안 및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안 주요내용

□ 종자산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

- 민간종자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“종자산업진흥센터”를 설립 또는 지정하는 근거 마련
- 종자관련 산업계, 연구계가 일정한 지역에 모인 종자기술연구단지 조성 지원하여 종자업체의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하고, 종자산업의 핵심인 품종육성 등 기술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제고
- 정부에서 공급하는 종자로 인한 피해발생 시, 피해비용을 지원하는 근거 마련

□ 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

- 종자산업법 중 절차법인 식물신품종 육성권리자의 보호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을 제정하면서
- 신품종보호관련 국제협약에 의거 2012년부터 보호대상이 모든 식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
- 품종보호권 침해죄에 대한 벌칙을 “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”에서 “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”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품종육성자의 권리 강화